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, □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연구실사고 조사표

※ 뒤쪽의	작성방법을	일 읽고 작	성해 주시	시기 바라!	며, □에는	- 해당하	는 곳에 $_{ m V}$	표시를	합니다.				(앞쪽)	
기관명				삼육대	대학교			기곤 유형			학 □ 설(연) □]연구기]그 밖의		
 주소		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815												
		사고'	일시	2020 년 5 월 23 일 13 시										
사고발생 원인 및 발생경위 ¹⁾				학과(부서)명: 환경원예학과(분류생태)										
		사고												
		장소		연구실명: 동물사육연구실 (연구분야: 동물행동연구)										
		연구활동내용		연구활동 수행인원 약 20명이 동물시육실습실의 동물행동학 연구를 수행										
		사고발생 당시 상황		청소 후 바닥에 남아있던 물기로 인하여 미끄러져 넘어짐										
피해 현	인적 피해	성명	성별	출생 연도	신분 ²⁾	상해 부위	상해 유형 ³⁾	상해 • 질병 코드 ⁴⁾	치료 (예상) 기간	상해 • 질병 완치 여부	후유 장해 여부 (1~14 급)	보상 여부	보상 금액	
		박**	*	**	대 학 원생	왼쪽 발목	골절	\$82.5 0, \$8 2.380, \$93.2	2달	미완 치		0		
		2												
		3												
		4)												
		5												
		※ 인적피해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, '인적피해현황'부분만 별지로 추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		
	물적 피해	피해물품					피해금액			ļ	약 백만원			
조치 및 향		- 담당 - 연구	- 사고 후 병원으로 이송 후 치료 진행 - 담당 교수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보고 -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사고내용 확인 후 사고 조사 - 연구실 안전공제에 따라 보험처리 접수 및 진행 중											
재발방	지대책	- 실습실 물기 제거, 미끄럼 방지 매트 또는 신발 구비 (상세계획은 별첨)												
		점검・진단					☑ 실시(실시일: 2019년 7월 23-25일) □ 미실시(사유:)							
연구실 안전관리 현황		보험가입					✓ 가입(가입일: 2020년 5월 25일)□ 미가입(사유:)							
		안전교육					☑ 실시(실시일: 2020년 3월 2일 ~ 6월 30일) □ 미실시(사유:)							
별 	첨	재발방지대책 상세계획 사고장소 현장 및 피해 사진 등												
				연구주체의 장						김 -	* *	(서명	또는 인)	
	관계자 확 20년 6월	여구시아서				경관리자				신 ,	* *	(서명	또는 인)	
				연구실책임자						정	*	(서명	또는 인)	

작성방법

- 1) 사고발생원인 및 발생경위
- ※ 연구실사고 원인의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사고일시[년, 월, 일, 시(24시 기준)], 사고발생 장소, 사고 발생 당시 수행 중이었던 연구활동 내용(연구활동 수행인원, 취급 물질・기계・설비, 수행 중이었던 연구활동의 개요 등), 사고발생 당시 상황[불안전한 연구실 환경(기기 노후, 안전장치・설비 미설치 등), 사고자나 동료 연구자의 불안전한 행동(예시: 보호구 미착용, 넘어짐 등) 등]을 상세히 기재할 것
- 2) 신분은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 - ※ 기관유형이 "대학"인 경우에는 ① 교수, ② 연구원, ③ 대학원생(석·박사), ④ 대학생(학사, 전문학사)에 해당하면 그 명칭을 기재하고, 그 밖의 신분을 기입할 경우에는 그 상세 명칭을 기재할 것
 - ※ 기관유형이 "연구기관"인 경우에는 ① 연구자(근로자 신분을 지닌 자), ② 학생연구원에 해당하면 그 명칭을 기재하고, 그 밖의 신분을 기입할 경우에는 그 상세 명칭을 기재할 것
 - ※ 기관유형이 "기업부설연구소"인 경우에는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(KOITA)에 신고된 신고서를 기준으로 ① 전담연구원, ② 연구보조원, ③ 학생연구원에 해당하면 그 명칭을 기재하고, 그 밖의 신분을 기입할 경우에는 그 상세 명칭을 기재할 것
- 3) 상해유형은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① 골절: 뼈가 부러진 상태
 - ② 탈구: 뼈마디가 삐어 어긋난 상태
 - ③ 찰과상: 스치거나 문질려서 살갗이 벗겨진 상처
 - ④ 찔림 : 칼, 주사기 등에 찔린 상처
 - ⑤ 좌상 : 받치거나 넘어지거나 하여 피부 표면에는 손상이 없으나 피하조직이나 내장이 손상된 상태
 - ⑥ 베임 : 칼 따위의 날카로운 것에 베인 상처
 - ① 이물 : 체외에서 체내로 들어오거나 또는 체내에 발생하여 조직과 익숙해지지 않은 물질이 체내에 있는 상태
 - ⑧ 난청 : 청각기관의 장애로 청력이 약해지거나 들을 수 없는 상태
 - ⑨ 화상 : 불이나 뜨거운 열에 데어서 상함 또는 그 상처
 - ⑩ 동상 : 심한 추위로 피부가 얼어서 상함 또는 그 상처
 - ⑪ 전기상 : 감전이나 전기 스파크 등에 의한 상함 또는 그 상처
 - ⑫ 부식 : 알칼리류, 산류, 금속 염류 따위의 부식독에 의하여 신체에 손상이 일어난 상태
 - ® 중독 : 음식이나 내용·외용 약물 및 유해물질의 독성으로 인해 신체가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상태
 - ⑭ 질식 : 생체 또는 그 조직에서 갖가지 이유로 산소의 결핍, 이산화탄소의 과잉으로 일어나는 상태
 - ⑤ 감염 : 병원체가 몸 안에 들어가 증식하는 상태
 - ⑩ 물림 : 짐승, 독사 등에 물려 상처를 입음 또는 그 상처
 - ⑪ 긁힘 : 동물에 긁혀서 생긴 상처
 - ⑱ 염좌 : 인대 등이 늘어나거나 부분적으로 찢어져 생긴 손상
 - ⑲ 절단 : 예리한 도구 등으로 인하여 잘린 상처
 - 20 그 밖의 유형: ① ∼ ⑲ 항목으로 분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상해의 명칭을 기재할 것
- 4) 상해・질병 코드는 진단서 상에 표기된 상해・질병 코드(질병분류기호 등)를 기재하여야 한다.